

## 22. 所得稅法施行令中改正令

大統領令 第14,860號 1995.12.30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각목”을 “각호”로 한다.

제13조중 “제12조 제13호 및 제17조”를 “제12조 제13호”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중 “감독을 받는 자” 다음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제17조 제1항 각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제2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중 “법인”을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25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  
계계약 또는 손해공계계약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연합회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8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2호 나목중 “12만원”을 “18만원”  
으로 한다.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  
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

원장관이 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  
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  
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받  
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기술계 기능직 종사자중 과학기  
술처장관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  
사한다고 인정하는 자

(2)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  
직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법 제  
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  
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예술품·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  
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

취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날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원  
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  
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  
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  
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  
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총리령이 정하는 사  
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  
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  
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  
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일시소득의 범위)”를  
“(문예창작소득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일시소득”을 “것”으로 한다.

제45조 제3호중 “어음” 다음에 “(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를 삽입하고, 동조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제45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8호중 “약정에 의한 보험금”을 “보험  
금”으로 하며, 동조에 제10호 및 제11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탁의 수익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  
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  
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  
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는 그 연장하는 날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제49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제50조의 제목중 “기타소득등”을 “일시재산소득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53조 제3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 제1호중 “임대료”를 “임차료”로 한다.

$$\text{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frac{\text{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text{보증금등의 적수}} \times \frac{1}{365}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제55조 제1항 제17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중 반환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62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2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충당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각액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무형고정자산과 시험연구용 자산의 상각액을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6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액(내용연수별 자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무형고정자산

제6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항중 “감가상각충당금·상각부인액”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업자가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산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되, 상각기간을 6월로 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를 별도로 계산한 후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산업용고정자산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⑧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상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자산중에 제4항 각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6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범위내에서” 다음에 “사업장별 또는 생산설비별로”를 삽입한다.

①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

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제6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제72조중 “기준내용연수에서”를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로 한다.

제73조 제2항 본문중 “취득가액”을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으로 한다.

제77조 제1항 제22호를 삭제한다.

제83조 제1항중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3호”를 “법 제35조 제1항 제3호”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법 제3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제8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부동산업등”을 “부동산업”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의

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음식·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하며, 동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제84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율중 사업자가 선택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다만, 법 제1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한 사업자의 경우

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가. 사업장을 특별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75

나. 사업장을 광역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60

다. 사업장을 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50

라. 사업장을 군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40

2. 당해 과세기간중의 접대비지출액을 그 접대를 한 각 지역별(특별시·광역시·시·군·기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이라 한다)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당해 지역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 경우 법 제3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밀비로서 사용지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는 접대비지출총액에서 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접대비지출액} \times \frac{\text{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text{접대비지출총액}}$$

가. 특별시지역은 100분의 75

나. 광역시지역은 100분의 60

다. 시지역은 100분의 50

라. 군지역은 100분의 40

마. 외국등 가목 내지 라목외의 지역은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지역의 비율

⑤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

가. 제4항 제1호의 율(접대비지출액에서 법 제3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밀비를 차감한 금액이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4항 제1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 과세기간의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제4항 제2호 각목의 율[당해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서 기밀비(당해 지역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과 제4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이 당해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4항 제2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 과세기간의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⑦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자치구 설치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

제87조의 제목중 “기타소득”을 “기타소득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기타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하며, 동조 제4호중 “법 제21조 제1항 제7호”를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임주 지체상금

제98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0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01조 제2항 제1호중 “근로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

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 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⑤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율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부터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⑦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⑧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제103조 제2항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⑤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거택보호대상을 말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택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의 제목을 “(부녀자공제등)”이라 하고, 동조중 “법 제51조 제1항 제3호”를 “법 제51조 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제110조 제1항 본문중 “자기가” 앞에 “법 제5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삽입한다.

제1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제15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1주택소유자
2.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

제117조 제1항 본문중 “법 제57조 제1항”을 “법 제57조 제1항 및 법 제129조 제4항”으로 한다.

제11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상실비용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6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으로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이 상인 것을 말한다.

②거주자가 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122조를 삭제한다.

제123조 제1호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으로 한다.

제130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6조 제6항의 서류

제132조 제1항중 “을 말한다”를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41조 제1항중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한다”를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4항중 “과세표준”을 각각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4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중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사업자”를 “거주자”로 한다.

②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 의한다.

1. 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감정평가위원회가 감정평가한 금액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1/2

제146조 제1항 제2호중 “동조 동항 제5호”를 “동조 제1항 제5호”로 한다.

147조 제4항중 “법 제81조 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81조 제4항”으로 한다.

제148조 제1항중 “세액의 결정은”을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 제1항을 준용하여”로 한다.

제153조 제1항 제4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 제1호중 “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로, “1년”을 “3년”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결한 시·군·구안의 지역

제15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4조 제5항중 “제1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으로 하고, 제6항중 “말한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다.

제155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9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동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제156조 제1호 본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를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57조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중 “출자지분” 다음에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중 “100분의 50이상” 다음에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의 자에게”를 삽입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용부동산 또는 주식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을 포함한다)

제161조를 삭제한다.

제162조 제6항 제1호중 “1976년”을 “1984년”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7항 제1호중 “1977년”을 “1985년”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163조 제6항 제1호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시가표준액(건물의 경우에는 제164조 제3항의 가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164조 제3항중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제8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7항중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하며, 동조 제8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p>	×	<p>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p> <hr/> <p>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

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 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text{년 } 1\text{월 } 1\text{일}\text{을 기준}\text{으로 한 개}\text{별공시지가} \times \frac{\text{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text{년 } 8\text{월 } 30\text{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 2\text{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제165조 제1항 제3호 가목중 “제158조 제1호”를 “제158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제158조 제4호”를 “제158조 제1항 제4호”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제1항 제3호 가목”으로 한다.

제166조 제1항중 “제157조 제4항·제5항”을 “제157조 제5항”으로, “제4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를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중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을 “제157조 제5항”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제4항 제2호”를 “제4항 제3호”로 한다.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

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중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57조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43조 제2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한다.

제1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법 제112조의2 제1항의 토지개발채권은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에 한한다.

②법 제1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토지개발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양도소득세의 물납의 승인은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부동산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할 세액의 1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물납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그 승인을



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재정경제원장관은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양도소득세의 물납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 제1항중 “법 제113조 제2항”을 “법 제113조 제2항 단서”로 한다.

제184조 제2항 본문중 “법 제127조 제6항”을 “법 제127조 제7항”으로 한다.

제18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증권, 제10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과 공채 및 사채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서 당해 채권 또는증권의 발행일부부터 최종상환일(당해 채권 또는증권의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개발신탁수익증권과 공채·사채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공채 및 사채증권투

자신탁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전액(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이내의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발행일부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공채 또는 사채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

②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저축(이하 이조에서 “장기저축”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저축계약일부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일 것
2. 다음의 저축. 다만, 적금 또는 부금의 경우에는 균등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에 한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불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한 것으로 본다.
  - 가.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및 부금
  - 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

금고가 취급하는 부금

다.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3. 당초 저축계약기간이 5년이상일 것

③제2항의 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로서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중도해지한 때까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세액을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 정산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장기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장기저축가입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장기저축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에 의하여 당해 저축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연도별로 각각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⑥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호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호의2”로, “제45조”를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1. 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

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2. 버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제193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호중 “금융기관등”을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로, “통장에 그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주는 경우”를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 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을 “금융기관등”으로, “우편”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를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제214조 제2항 각호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그 지급받는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4조 제1항중 “당해 근로소득에서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를 “근로소득에”로, “산출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산출세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99조 제4항중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근로소득”으로 한다.

제202조중 “금액을”을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로 한다.

제211조 제2항 제3호중 “국세청장”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14조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동법 시행령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저축에 편입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법 제16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164조 제3항 제1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223조를 삭제한다.

제2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부동산 양도신고등) ①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②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2.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제116조 제4항 제3호의 경우는 결정일)까지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거나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법 제165조 제5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3. 판결·화해 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⑧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법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안내를 받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별표1 젓소란 “20마리”를 “30마리”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 제6항 제1호 및 동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2

조·제63조·제67조·72조·제73조 제2항·제84조 제3항·제141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영 부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저축성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

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162조 제6항 제1호 및 동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7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

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이 영 시행일전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제102조 제4항에 규정하는 매수일로 보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0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이자계산방식이 복리방식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 단리방식으로 거래하여 온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까지 종전의 단리방식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어음등의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원천징수세액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정산한다.

제1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153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한 특례)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폐기물예치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특례) ①제5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의 예치금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6조(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8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1996년 1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의2 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로 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로 한다.

제32조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 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

〈별지서식 생략〉

### ◇개정이유◇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서 19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바, 채권등을 만기전에 매도하여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도 종합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1995.12.29, 법률 제5031호)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5년미만의 저축성 공제상품의 공제차익에 대하여는 보험차익의 경우와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보장성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공제료 불입액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영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제109조 제4호).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모든 유가증권(주식은 제외)으로 하고,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등을 정함(영 제102조).

다. 종전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단일화하여 국민의 거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영 제154조 제1항).

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5조 제15항).

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에 따른 보완장치로서 3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5년이상 장기저축의 요건·취급기관 및 저축상품의 종류등을 정함(영 제187조 제2항).

바.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부동산양도 등기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동산양도등기전신고제도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영 제224조).

〈법제처 제공〉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